

獨逸 統一 以後 舊東獨地域 農業의 體制轉換⁽¹⁾

鄭英一

이 연구는 2차대전 후 분단시대를 거쳐 1990년의 동서독 통일 이후 농업체제전환을 경험한 구동독지역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독일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함축을 얻고자 이루어진 것이다. 먼저 통일 전 동독 농업구조의 특징을 살펴보고 통일 후 독일정부가 체제전환과 관련하여 추진해 온 주요정책들을 고찰한 다음, 그 결과로 형성된 현재의 농업체제가 어떤 모습으로 재편성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독일의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과 한계를 새로운 소유권 정립에 따른 사회적 비용, 체제전환과정에 수반되는 고용대책, 새로운 농업경영체를 담당할 농업종사자의 자영능력 등의 측면에서 검토해 보았다.

1. 序論

1990년의 독일 통일 이후 동독지역에서는 사회주의적 농업의 자본주의적 농업으로의 체제전환이라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이후 다른 구사회주의권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체제전환의 일환으로서의 농업 변화와는 달리 동독지역 농업의 이와 같은 변화는 분단국가의 통일(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동독이라는 사회주의 국가의 해체와 서독이라는 매우 발달된 자본주의 국가로의 흡수)이라는 상황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바로 이 점이 통일 후 동독지역에서의 경험이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까닭이다. 분단된 남북한의 재통합이 구체화될 때 농업분야에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에 대한 대응을 고려한다면, 분단의 역사적 경험을 지닌 국가에서의 체제전환의 예인 구동독지역의 경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체제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계약관계를 기초로 조직된 기업의 활동, 그리고 시장기구에 의한 자원의 배분 및 소득의 분배를 그 특징으로 한다. 여기에 비추어 보면 농업분야에 있어서 자본주의체제로의 전환에 있어서는 (1) 토지를 포함한 생산수단의 소유권이 어떻게 확립되는가, (2) 농업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어떤 경영체가 들

(1) 이 연구는 재단법인 수암장학문화재단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독일 괴팅겐대학의 이명현 박사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데 대해 특히 감사하고자 한다.

어서는가, 그리고 (3) 농업생산의 투입물과 산출물의 시장 및 유통기구가 어떻게 구축되는가의 세 가지 문제가 핵심을 이루게 된다. 이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處理’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체제전환 이전의 상태와 함께 새로운 정부의 정책방향 설정 및 추진방식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이 글에서는 그 중 (1)과 (2)의 측면을 중심으로 구동독지역에서의 통일 후 농업체제 전환과정을 음미하고 그것이 장래 남북한간의 농업체제통합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먼저 통일 이전의 구 동독지역의 농업구조의 특징을 살피고(2장), 통일 후 독일정부가 체제전환과 관련하여 실행했던 중요한 정책들의 내용을 고찰한 다음(3장), 그 결과로 형성된 현재의 농업체제가 어떤 모습으로 재편성되고 있으며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4장)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독일의 경험이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남북한간의 농업체제통합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5장). 분석대상기간은 통일이 이루어졌던 1990년부터 현시점에서 자료의 입수가 가능한 1996년까지로 한정한다. 이 6년의 기간은 통일 직후의 여러 가지 급격한 변화가 일단락되고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 이를 기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統一前 東獨의 農業構造

통일이 되던 시점에서 농업은 구동독의 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즉 전국토의 57%인 617만 ha가 농업용지로 사용되고 있었고, 농업취업자는 약 85만명으로 전체취업자의 약 10%, 농업부문의 부가가치는 284억 동독 마르크로 전체 부가가치의 약 8%를 차지하고 있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1992)]. 이것은 농업의 체제전환이 통일 후 동서독의 경제통합에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동독의 농업구조는 2차 대전 이후 사회주의화된 국가들이 경험했던 공통적인 과정 즉, 토지개혁, 집단화, 전문화를 통해 그 기본적 성격이 결정되고 있었다[김경량·이명현(1995)]. 1945년에서 1949년의 기간에 소련점령군에 의해 행해진 토지개혁을 통해서 그 이전까지 이 지역 농업구조의 특징을 이루었던 100 ha 이상의 대경영체(농지의 28% 점유)에 대한 무상몰수와 그것을 통한 대량의 국유지 창출, 빙농에 대한 토지분배가 이루어졌다. 동독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는 서독으로의 탈주자와 강제이주자들의 토지 등에 대한 국유화가 이루어졌다.⁽²⁾ 1952년에서 1960년의 기간에 걸쳐서는 명목상으로는 자발적이지

(2) 이에 해당되는 농지면적은 약 70만 ha이다[김영훈(1997, p. 66)].

만 실질적으로는 강제적인 집단화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1950년대 초반 85만호 이상의 개인농가로 구성되어 있던 둑독의 농업구조는 대규모의 協同農場 (landwirtschaftliche Produktionsgenossenschaft: LPG)을 주축으로 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그후 1970년대에 추진된 이른바 ‘集團化의 段階高揚’을 통해 협동농장 조합원의 토지소유권은 형식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이른바 포괄적이며, 지속적인 무상의 ‘組合的 利用權’ (genossenschaftliches Nutzungsrecht) 우선의 원칙에 따라 형식만의 것으로 되었다. 이에 병행해서 협동조합 내의 토지 이외의 모든 생산수단(건물과 가축 등) 또한 공유화되었다. 또한 1970년대에는 이른바 농업의 ‘產業化’가 추진됨으로써 기존농장의 통합을 통한 ‘大規模化’와 경종농장과 축산농장의 분리를 통한 ‘專門化’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농업의 산업화정책은 경제적 효율성의 저하와 환경문제를 낳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³⁾

이러한 과정을 거쳐 통일이 이루어진 시점에서는 전체 농경지의 2/3(약 4백만 ha)가 형식적으로는 협동조합원의 소유로, 나머지 1/3(약 2백만 ha)이 국가소유로 되어 있었다. 이러한 소유구조 위에 협동농장이 농용지의 약 80%, 가축스톡의 약 75%를 담당하는 주

〈表 1〉 統一 直前 東獨 農業經營體의 類型別 構成 (1989年)

경영체수	종사자(명)		농용지 (ha)		가축(GV ¹⁾)	
	합계(천)	평균	합계(천)	평균	합계(천)	평균
개인농장	3,558	5.5	1.5	335	94.1	165
가계목적소경지 (375,000)	—	—	—	297	—	351
협동농장(LPG)	4,530	694.9	153.4	5,075	1,120	4,343
경종 LPG	1,164	306.9	263.6	4,987	4,284	69
축산 LPG	2,851	343.6	120.5	73	26	4,273
원예 LPG	199	27.6	138.7	15	75	1
국영농장(VEG)	464	95.3	205.3	447	963	479
경종 VEG	152	46.2	303.9	408	2,684	36
축산 VEG	312	49.1	157.4	39	125	443
국영농장(VEB) ²⁾	116	29.5	254.3	17	147	492
합 계	8,037	825.2	102.7	6,171	768	5,830
						725

註: 1) 가축의 종류와 크기를 고려한 가축단위

2) Volkseigener Betrieb: 시험장 등의 특수한 국영농장

資料: Beckmann and Hagedorn (1995, p. 134)

(3) 경종과 축산간의 과도한 분리와 전문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통 1개의 경종 협동농장과 1~3개의 축산 협동농장을 ‘協力體’ (Kooperation)라는 단위로 묶어서 운영하였으나 실제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Rost and Wissing (1992) 참조.

력 경영체의 위치를 지니고 있었다(〈表 1〉 참조). 협동농장은 경종농장의 경우 평균 260명의 인력과 4,000 ha에 달하는 농용지 규모를, 축산농장의 경우 평균 120명의 인력과 1,500GV(대동물단위)에 달하는 가축규모를 가지고 있었다. 협동농장은 농업생산뿐 아니라 농업 기계 및 건물의 유지, 나아가 지역사회의 사회, 문화적 기능까지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다. 國營農場(volkseigenes Gut: VEG)은 전농용지의 약 7%, 가축스톡의 약 8%를 차지하는 부차적 경영체로서 경종농장의 경우 평균 300명의 인력과 2,700 ha의 농용지 규모를, 축산농장의 경우 평균 160명의 인력과 1,400GV에 달하는 가축규모를 지니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경영단위의 대규모성은 서독지역의 경우 전업농가라 하더라도 2인 미만의 전업종사자와 30 내지 40 ha의 농용지규모가 평균적이었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현상이었다.

3. 體制轉換을 為한 農業政策

1990년의 독일통일 이후 사회주의적으로 조직, 운영되어 왔던 동독지역의 농업은 자본주의체제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동독 농업체제 전환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협동농장과 국영농장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관계의 사적 소유관계로의 대체 및 그것과의 관련 속에서 협동농장과 국영농장의 시장경제에 부합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영체로의 전환이다. 새로운 자본주의적 소유구조의 확립과 함께, 전혀 새로운 시장경제 및 가격체계로의 편입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영체의 성격 전환은 생산규모, 생산물의 구성, 생산요소의 결합방식 등에서 큰 변화를 수반하게 되며, 이러한 모든 과정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이 절에서는 새로운 소유관계의 정립과 새로운 농업경영체의 형성과 관련하여 독일 정부가 추진한 주요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3.1. 協同農場의 再編

협동농장 및 국영농장의 재편에 따른 토지소유권의 확립과 관련하여 정치적으로 설정된 기본적 대전제는 1945년에서 1949년에 이르는 기간에 소련 점령군이 실행했던 토지개혁의 결과를 원상복귀시키지 않는다는 것, 즉 토지개혁과정에서 몰수된 토지에 대한 구소유자의 반환요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⁴⁾ 이 점은 1949년 이후 구동독 정권 아래

(4) 이러한 전제는 1990년 6월 15일 동서독 정부의 공동성명에서 구체화되었으며 1990년 9월 12일 이른바 2+4 회담의 결과로 국제정치적으로 확인되었다. 이 전제는 통일조약의 구성부분을 이루게 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 Thöne(1993, pp. 43-44) 참조.

에서 분단상황과 관련하여 행해진 몰수에 대해서는 구소유자의 반환요구권을 인정해 주는 점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이 결정에 따라 토지개혁으로 몰수된 농지 중 (1) 농민에게 분배되었던 농지에 대해서는 분배받은 농민의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2) 분배되지 않고 국유지로 남았던 농지는 신탁청의 관리 이후 매각한다는 원칙이 나오게 된다.

이에 따라 협동농장의 자산 중 조합원이 출자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사적 소유권을 확인하여 전면적으로 인정해줌으로써 소유권 정립문제가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되었고, 협동조합과 뒤에서 살펴볼 그 후속 법인체들은 그 구성원들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되었다. 그러나 협동농장의 운영과정에서 증식된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공유자산에 대한 소유권의 확립 및 협동농장의 자본주의체제에 부합하는 경영체로의 전환과정은 별도의 법적 조치를 필요로 하였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제정된 것이 農業適應法 (landwirtschaftliches Anpassungsgesetz: LAG)이다. 최초에 구동독 체제 아래서 자유선거로 구성된 人民議會 (Volkskammer)에 의해 1990년 6월에 제정된 이 법은 협동조합이 조합원들의 결의에 따라 합병, 분할, 또는 자진해산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의한 탈퇴를 보장하고 탈퇴자의 지분청구권을 규정하였다. 또한 구동독의 협동조합을 서독 민법이나 상법이 인정하는 법적 형태⁽⁵⁾로 전환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었으며 1991년 말까지 전환하지 않은 협동농장은 자동 해산되도록 되었다. 이 법은 통일 후 1991년 7월에 연방의회에서 개정되었는 바, 그 방향은 토지 및 자산 출자자, 그리고 탈퇴자 특히 탈퇴하여 개별경영을 창설하고자 하는 자의 이익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1) 합병, 분할, 전환에 관한 결정에서 조합원 2/3의 찬성을 의결조건으로 추가하였고, (2) 탈퇴자에게도 토지와 자산지분의 반환 이외에 추가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였으며, (3) 탈퇴자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농민과 함께 새로운 농업경영체를 창설하는 경우 지분청구권에 대한 변제가 그렇지 않은 탈퇴자에 비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였다.⁽⁶⁾

통일 당시 약 4,500개에 이르던 협동농장들은 이 법에 따라 규모가 과대한 농장의 분할, 축산과 경종 분야의 결합 등의 길을 걸으면서 1991년 말까지 각종의 다른 형태로 전환

(5) 民法上の 會社 (Gesellschaft bürgerlichen Rechts), 合資會社 (Kommanditgesellschaft) 등 人的會社 (Personengesellschaft), 登錄組合 (eingetragene Gesellschaft), 有限會社 (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 株式會社 (Aktiengesellschaft) 등 資本會社 (Kapitalgesellschaft) 를 구분한다.

(6) 농업경영체를 창설하는 탈퇴회원에 대해서는 1개월 안에 변제하도록 하고 농업경영체를 창설하지 않는 탈퇴회원에 대한 변제는 연말 대차대조표 확정 이후 5년 분할방식으로 이행하도록 하였다.

되었으며(구체적인 사례는 〈附表〉 참조), 그 중 1/4은 후속체 없이 해산되었다(BML (1992, p. 20)).

3.2. 國營農場의 民營化

협동농장의 재편이 형식만 남아 있을 뿐이었던 조합원들의 사유권을 실질화하는 방식이었던 것과는 달리 국영농장의 재편은 信託廳(Treuhändanstalt) 책임하에⁽⁷⁾ 토지와 자산 중 반환청구권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반환⁽⁸⁾을, 반환청구권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매각⁽⁹⁾을 통해 소유권을 확립한다는 기본구도로 진행되었다. 이 원칙은 구동독 국가소유하에 있던 비농업부문 산업시설들에 대해 취한 사유화 기본방침과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국영농장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¹⁰⁾의 매각은 다음 몇 가지 사정으로 인해 용이하게 전전될 수 없었다(BML (1992)). 그것은 첫째, 지적도와 토지대장의 부실, 지계표의 상실 등으로 인해 정확한 筆地 파악이 어려웠으며, 둘째, 반환권이 인정된 필지는 별도 취급해야 하며, 셋째, 반환권 인정여부가 바로 결정되지 못하거나 구체적 반환내용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편에 대해서는 처분이 금지되어 있었고, 넷째, 필지의 심한 분산으로 인해 우선 농지의 교환분합이 행해져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독일 정부는 국영농장 소유지 매각에 있어 다음과 같은 3단계 방식을 채택하였다.⁽¹¹⁾

1단계: 장기(12년) 임대계약을 통해 체제전환기의 토지이용권의 안정을 도모한다. 이 때 임대 대상자는 경영계획을 검토하여 선정하되 같은 등급인 경우에는 재창업농 및 현지 소재 신규창업농-LPG 후계 법인체-현지비소재 신규창업농 등의 순서에 따라 우선권을 부여한다. 이 단계는 이미 완료되었다.

2단계: 국유농지의 임차자 및 토지개혁 이전의 토지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유리한 조건에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1994년 12월에 발효된 ‘賠償 및 補償 提供法’ (Entsch digungs- und Ausgleichsleistungsgesetz)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는 이 단계는 현재의 토지 이용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토지의 일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7) 국유농지의 관리 및 사유화는 1994년까지 신탁청이 담당했으나 신탁청의 해산 이후로는 統一以後特殊任務廳(Behörde für vereinigungsbedingte Sonderaufgaben: BVS) 산하의 土地民營化會社(Bodenverwaltung und -verwertungsgesellschaft: BVVG)가 담당하고 있다.

(8) 반환이 기술적,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상(Entsch digung)을 행하였다.

(9) 다만 소련점령군에 의한 개혁으로 토지를 몰수당함으로써 반환청구권이 없는 구소유자에게는 보상(Ausgleich)을 행하였다.

(10) 1991년 현재 그 중 75% 정도는 국영농장이 아닌 다른 경영체들에 임대되고 있었다.

(11) 이 3단계 개념은 1992년 10월 이른바 Bohl-Papier를 통해 제시되었다.

의미와 함께, 소련점령군에 의해 무상으로 토지를 몰수당한 구토지소유자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는 해주지 않되 그들이 입은 역사적 피해에 대하여 일정한 보상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 과정은 그 자체가 복잡한 확인 절차를 요하는 데다가, 토지 반환이나 배상권을 인정받지 못한 소련점령군 하의 토지개혁의 희생자들이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EU측으로부터는 이러한 토지 취득이 국가의 보조금에 의한 토지매입의 성격을 갖는다는 이의가 제기되는 등 아직도 여러 가지 해결되지 못한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안고 있어서 1997년말 현재 농지 매각실적은 1만 ha에 불과하다.

3단계: 2단계가 완료되고 난 후 잔여 토지를 *去來價値(Verkehrswert)*⁽¹²⁾에 따라 매각하는 단계로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이와 같은 국유농지 사유화의 과정은 임차대상자의 선정 기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협동농장의 후속체보다는 재창업농이나 신규창업농을 우대함으로써 가족경영을 우대한다고 볼 수 있다.

3.3. 農業經營體의 舊負債 處理

통일 이전 구동독의 농업경영체들은 약 76억 DM에 이르는 부채를 안고 있었으며, 이는 시장경제 운영의 결과가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에 의한 재정배분 및 재분배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었다. 따라서 통일 후 구조전환 과정에서 이 구부채의 정리가 후속경영체들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그 중 12억 DM의 부채는 신탁관리청에 의해 탕감되었고 35억 DM에 대해서는 여신기관과 경영체 사이의 합의를 통한 지불유예, 채권의 후순위화가 이루어졌다.

3.4. 農業構造改編을 爲한 投資支援

독일 정부는 농지와 자산에 대한 소유관계를 확립하고 농업경영주체를 자본주의 체제에 합치되는 조직으로 개편해 가는 동시에 급격한 경영환경변화에 대한 대응과 경영구조의 개선을 돋기 위하여 1991년부터 5개년에 걸쳐 구동독에 대한 특별재정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해 왔다. 약 175억 DM의 규모를 지닌 이 프로그램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適應支援’ (Anpassungshilfe) 와 경영개선투자에 대한 각종 지원책 등을 들 수 있다. 적응지원은 통일로 인해 동독농업이 크게 된 농산물 가격의 급락과 지불능력의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경영체의 노동소요추정량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이 지원은 경영체의 법적 형태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졌지만 지원액 중 기본지원액의 설정과 가변 지원액의 산정방식이 가족경영에 한층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었다.

(12) 시장가격에 근거한 공시지가를 가리킨다(김수석(1997)).

(BML(1992, p. 125)). 한편 경영개선 투자지원책으로 개별경영형태에 대해서는 ‘主業 家族農 再創業과 現代化 支援’이, 기타 경영형태에 대해서는 ‘法人 形態 및 人的 會社 形態의 農業經營體의 構造改善 및 創設 支援’이 행해졌다. 두 가지 시책 모두가 실물투자를 위한 응자지원액에 대한 이자경감을 공통의 내용으로 한다(가족농의 경우 40만 DM, 법인 및 인적 회사의 경우 350만 DM까지의 응자에 대해 이자경감이 행해짐). 단, 전자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창업지원금(최고 23,500 DM), 초기형 축산투자 지원금(최고 5만 DM), 그리고 별도의 저리 공공융자(최고 40만 DM)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가족농 우대정책은 동독지역에서의 가족농 창업은 어려운 초기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논리로 정당화되었다.

이 밖에 일반적인 EU 농업투자지원프로그램도 새로 적용되었는 바, 이들 시책 가운데 상당수는 가족농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나 지원액에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어서 이것 역시 가족농에 보다 유리한 정책적 환경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¹³⁾

4. 東獨地域 農業의 構造變化

사회주의 농업체제의 유산 위에 통일에 뒤이은 체제전환과정의 정책들이 추진되면서 구 동독지역의 농업은 단기간에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 장에서는 최근자료 입수가 가능했던 1996년 혹은 1997년 시점까지의 변화상황을 농업노동력 규모, 농지 소유 및 이용 구조, 농업경영체의 유형별 구성 및 경영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4.1. 農業從事者의 急激한 減少

농업의 체제전환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농업종사자 수의 급격한 감소이다. 통일 직전에 약 85만명에 이르렀던 농업경영체 종사자의 수는 1991년말에는 그 수효가 약 30만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그 이후에도 감소추세가 계속 이어져 1996년에는 16만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13) 농업투자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농업종사자에 대한 직업재해 및 의료보험제도에 있어서도 가족농을 전제로 한 서독의 제도가 그대로 시행됨으로써 가족농 우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Koester and Brooks(1997)).

(14) 여기에 있어서는 직접적 농업생산 이외에 전후방 관련 활동과 문화, 사회, 행정분야 종사자 까지 농업경영체가 포용하고 있었던 점이 감안되어야 한다.

〈表 2〉 東獨地域 農業勞動力 規模의 推移(1989-1996年)

(단위: 천명)

연 도	가족노동력	고용노동력		합 계
		상용	임시	
1989	—	—	—	848.2
1991	33.2	321.1	7.6	361.9
1993	42.0	128.1	9.0	179.1
1994	44.1	113.0	7.6	164.7
1995	47.8	106.2	7.4	161.4
1996 ⁽¹⁾	48.5	103.6	7.4	159.5

註: 1) 추정치

資料: BML(1992, 1996, 1997, 1998)

첫째로 체제전환 전반에 관련한 정책들이 노동과 자본의 가격에 미친 영향이다. 즉, 통일 후 동독지역 산업전반에 적용된, 노동생산성과 크게 괴리된 높은 임금수준 및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급여 때문에 농업경제체 노동력의 유출이 촉진되었으며 다른 한편 정부에 의한 각종의 농업투자지원프로그램이 경영체의 자본조달가격을 낮춤으로써 노동대체적 투자를 촉진하여 고용감소를 촉진했을 가능성이 있다[Koester and Brooks(1997, pp. 16-17)]. 둘째로 농업산출물 구성에 있어서 노동집약적인 축산분야의 급격한 위축이다. 1989년 동독지역의 가축사육두수가 소 572만두, 돼지 1,194만두였던 것이 1993년에는 각각 280만두와 395만두로 매우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김수석(1997)]. 이와 같은 축산의 급격한 위축은 기본적으로 통일전 서독에 비하여 매우 고평가되어 있었던 축산물의 상대가격이 통일 이후 서독의 가격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급격히 하락한 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¹⁵⁾

이에 따라 농업부문으로부터 대량으로 방출된 인력의 상당부분이 실업상태에 놓이게 됨으로써⁽¹⁶⁾ 구동독 농촌지역의 각종 경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구조상 농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전반적인 경제구조가 취약하고 여타 산업의 입지조건

(15) 통일전 동독의 마르크 표시 주요곡물의 가격이 서독의 DM 마르크 표시 가격의 약 2배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축산물의 경우는 2.5배 내지 4.5배 수준이었다[Koester and Brooks(1997, p. 33)].

(16) 독일정부의 1992년 농업연차보고서에 따르면 1990-1991년 사이 방출된 약 55만명의 인력 중 12만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으며 10만 5천명은 단기취로사업에, 4만명은 재취업 교육에, 13만 5천명은 조기은퇴상태에 들어갔으며 15만명 정도가 실업상태에 놓인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BML(1992) 참조.

도 불리하다. 따라서 농업부문의 높은 실업률이 바로 그 지역의 높은 실업률로 이어지고 지역경제 전반의 침체뿐 아니라 각종의 사회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사태의 귀결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일이다.

4.2. 農地 所有 및 利用 構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농지의 소유권 확정과정을 통해서 성립된 동독지역 농지의 소유 및 이용 구조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경영체들의 임차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이다(<表 3>).

동독지역 경우 1997년 현재 전체 경영체 중 임차지가 있는 경영체의 비율은 서독지역과 비슷한 60% 수준에 있지만, 자작지가 있는 경영체의 비율이 서독의 90%보다 낮은 70%에 불과하며 순임차농이 1/4인 8,600개나 된다(서독은 10% 수준). 임차지의 비율은 더욱 높아서 총농경지의 90%가 임대차 관계에 놓여 있으며 순임차농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만도 30%에 이른다. 이러한 사실은 우선 농업적응법 아래에서 이루어진 협동농장의 체제전환이 자작 중심의 개별농을 다수 창출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바, 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협동농장의 후속체로서 조합원 소유지 또는 국유지의 임차를 위주로 하는 법인체가 광범위하게 존속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그 밖에 총농용지의 1/3에 달하는 국유농지의 매각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그 대부분이 임차되고 있는 데에도 기인한다.⁽¹⁷⁾

<表 3> 農耕地 所有 및 賃借關係의 東西獨 地域間 比較(1997年)

경영체 수(단위: 천)						
자작지가 있는 경영체 (1)	임차지가 있는 경영체 (2)	임차지만 있는 경영체 (3)	소유지가 있는 경영체 (4)	경영체 총수 (5)	임차농비율(%) (=2)/(5))	
동독지역	23.2	19.9	8.6	23.4	32.0	61.9
서독지역	450.7	310.0	50.1	453.6	503.7	61.5

농경지 면적(단위: 천ha)

자작지 (1)	임차지 (2)	임차지만 있는 경영체의 임차지 (3)	경영체 소유지 (4)	총면적 (5)	임차지비율(%) (=2)/(5))
동독지역	427.2	5064.4	1748.0	481.9	5,558.8
서독지역	5913.7	5573.4	1257.1	6361.9	11,576.2

資料: BML(1998)

이와 같은 임차 위주의 경영구조의 형성은 체제전환과정의 유동적 상황 속에서 개별 경영체가 경영규모의 조정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경영체로 하여금 장기적 계획에 입각한 투자를 기피하도록 만드는 문제점을 놓게 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신탁청의 12년 장기 임대정책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부분적인 대응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3. 經營體의 類型別 構成과 經營成果

농용지 등 생산수단의 소유권 확정과 각종의 투자지원책을 통하여 동독지역의 농업경영체들은 다양한 형태로 전환되었다. 새로이 생겨난 농업경영체들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그 법적 형태에 따라서 법인체, 개별경영, 인적 회사로 분류된다. 이와 같은 유형구분은 단순히 사업자의 결합형태 및 부채상환 의무라는 법적 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생산규모, 작목의 구성, 생산요소의 결합형태 등 경제적 기준에 따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방식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동독지역의 농업구조를 파악하는데 편리하며 유용한 기준이라 볼 수 있다. 첫째, 각각의 경영체 유형은 발생경로로 볼 때 각각 농업체체 전환 과정에서 협동농장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한 후속경영체(법인체), 협동농장에서 탈퇴한 조합원이나 서독지역에서 진입한 농업경영자에 의해 신설된 가족농(개별경영), 그리고 그러한 가족농의 결합체(인적 회사)에 대체로 대응한다. 둘째,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세 가지 형태간에 는 경영규모, 생산요소의 결합형태 등에 있어서 적어도 평균적으로는 뚜렷한 차이가 보인다. 이하에서는 이 분류에 기초하여 동독지역의 최근의 농업구조를 살펴보기로 하자(<表 4>).

통일 직전 9천을 밀돌던 경영체의 총수는 1996년 3만을 넘게 되었으며,(18) 그 중 약 80%를 가족농으로 볼 수 있는 개별경영이, 9% 정도를 인적 회사가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 협동농장의 후속체라고 볼 수 있는 법인체들의 비중은 10%에 불과하게 되었지만 이 숫자는 통일 전 협동농장의 총수가 4,500여개 정도였음을 감안한다면 결코 적은 것은 아니다.(19) 다른 한편, 농경지면적에서 점하는 비중을 보면 개별경영과 인적 회사가 각각 22%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법인체의 비중은 상당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5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의 성립은 통일 후 2, 3년 동안에 급격히 진전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비교적 안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체제전환 이후에 있어

(17) 물론 매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농지매입자 가운데서 자작 농업경영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를 쉽게 예측할 수는 없다.

(18) 1 ha 이상의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한 숫자.

(19) 협동농장 중 1/4이 후속체 없이 해산되었다.

<表 4> 最近 東獨地域 農業經營體의 類型別 構成(1997年)

	경영체 수	비율 (%)	농경지 (ha)	비율 (%)	평균규모 (ha)
개별경영	26,966	81.5	1,236.5	22.2	46
인적 회사	3,033	9.2	1,265.7	22.7	417
사법상 법인체	3,036	9.2	3,055.2	54.9	1,006
등록조합	1,261	3.8	1,785.5	32.1	1,416
유한회사	1,605	4.8	1,180.3	21.2	735
공법상 법인체	79	0.2	8.7	0.2	110
합 계	33,114	100.0	5,566.1	100.0	168

資料: BML(1998)

서도 협동농장의 후속체로서의 법인체들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존속하게 된 원인으로는 협동조합 구성원들의 급격한 시장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의 부족, 집단농장체제 하에서의 과도한 분업 및 전문화로 인한 자영농민적 경영능력의 상실, 그밖에 지역에 따라서는 영세한 토지소유구조 등이 지적되고 있다(Paarlberg(1992), 김수석(1997), 김영훈(1997)).

이들 개별경영, 인적 회사, 법인체들은 농경지 평균면적으로 볼 때 각각 50 ha, 400 ha 수준, 그리고 1,000 ha 수준 내외로서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개별경영 가운데서 약 30%의 비중을 차지하는 주업농들의 평균경지규모는 120 ha 수준으로 서독의 주업농에 비해 훨씬 큰 규모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규모의 측면에서 유형별로 뚜렷한 격차를 보여주는 이질적 경영형태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 아래서 이들간의 효율성의 우열 및 그 격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문제는 통일 후 독일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들이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가족농에 유리한 편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책의 적절성을 평가한다는 면에서도 관심거리로 되지 않을 수 없다.

1996년 독일 농림부의 農業年次報告書(Agrarbericht)에 발표된 1994/1995년도 표본농가 조사에 따른 경영성과를 경영체 유형별로 비교해 보면⁽²⁰⁾(<表 5>), 동독지역의 전업 개별 경영과 인적 회사들은 ha당 400 DM 수준의 농업소득(정의는 표의 주를 참조)을 올리고 있는 반면 법인체들은 농업소득을 거의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20) 1997년 이후의 농업연차보고서에서는 인적 회사의 조사결과치가 동서독 합산평균만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그 중 서독지역에 있는 인적 회사가 3/4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동독지역에만 한정된 경영체 유형별 비교가 불가능하다.

<表 5> 東西獨地域의 農業經營體 類型別 經營指標 比較(1994/1995年, 標本農家調查結果)

지역	서독지역		동독지역	
	개별경영(전업농)	인적 회사	법인체	
법적 형태				
표본수	7,543	729	137	301
표준소득(1,000 DM)	56	115	351	1,861
농경지(ha)	39	161	415	1,721
임차지(ha)	21	144	407	1,708
노동력(AK)	1.62	2.16	5.11	46.42
가족노동력(AK)	1.44	1.54	2.28	—
가축(VE/100 ha)	154.7	29.2	31.6	65.6
헥터당 고정자산(DM/ha) ¹⁾	5,208	2,774	2,466	2,685
고정자산/노동력(1,000 DM/AK)	123.4	206.8	200.3	99.5
농경지/노동력(ha/AK)	24.1	74.5	68.7	40.1
헥터당 곡물수확량(100 kg/ha)	58.2	52.9	55.5	51.5
젖소마리당 산유량(kg/마리)	5,336	5,256	5,072	4,800
영업수익(DM/ha) ²⁾	5,579	2,239	2,522	3,365
영업비용(DM/ha) ³⁾	4,406	1,799	2,101	3,388
직접비용(DM/ha)	1,767	570	692	946
지대(DM/ha)	258	172	192	162
헥터당 고용노동비용(DM/ha)	143	115	263	965
노동력단위당 고용노동비용 (1000 DM/AK) ⁴⁾	31.8	29.9	38.6	35.8
농업소득(Gewinn) (DM) ⁵⁾	46,200	70,628	174,888	-40,782
헥터당 농업소득(DM/ha)	1,173	440	421	-24
농업소득/가족노동력(DM/AK)	32,132	45,943	76,705	—
헥터당 노동보수 ⁶⁾ (DM/ha)	1,316	554	684	941
노동력단위당 노동보수(DM/AK)	31,974	41,314	55,542	34,884

註: 1) 고정자산 = 건물가치 + 기계 및 기구가치

2) Unternehmensertrag: 대체로 우리 나라의 농업조수익 개념과 일치하지만 소유농지에 대한 임대료수입을 포함한다.

3) Unternehmensaufwand: 우리 나라의 농업경영비에 해당.

4) 고용노동비용 = 임금 + 급료 + 사회보장부담금

5) 영업수입 - 영업비용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농업소득 개념과 유사하지만 임대료 수입이 산입되어 있다.

6) 노동보수 = 농업소득 + 고용노동비용

資料: BML(1996)

법인체들이 다른 경영형태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단위면적당 고용노동비용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인체의 경우 그 성격상 노동소요 전체가 고용노동에 의해 충당되고 있는 반면 개별경영과 전업농의 경우에는 명시적 임금을 받지 않는 가족 또는 출자자 노동의 비중이 높으므로 농업소득을 기준으로 한 경영성과 비교는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에 따라 농업연차보고서는 넓은 의미의 ‘勞動報酬’ 즉 ‘農業所得 + 雇傭勞動費用’을 경영성과 비교를 위한 또 하나의 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노동력단위당 노동보수를 비교해 보면 인적 회사가 약 55,000 DM, 개별경영체가 40,000 DM 수준인 데 비해 법인체는 35,000 DM 수준이다. 법인체의 낮은 노동보수는 다른 형태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자본장비도(노동력단위당 고정자산), 그것과 관련성을 지니는 낮은 토지생산성(예를 들어 헥터당 곡물수확량, 젖소마리당 우유량), 또한 낮은 수준의 노동력 단위당 농지면적, 즉 상대적 과잉노동력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하여 농업소득 중 상당한 부분을 이루는 정부의 각종 보조금이 기본적으로 면적단위에 비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 또한 노동집약도가 높은 법인체의 경영성과 또는 노동보수를 상대적으로 낮추는 요인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법인체의 상대적으로 열등한 경영성과는 과잉인력 및 자본부족에서 오는 비효율성과⁽²¹⁾ 지원정책의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일정한 편향 등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초래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추세는 법인체의 경영성과가 꾸준히 개선되어 오고 있다는 점이다(Beckmann and Hagedorn(1995)). 1991/1992년도에서 1994/1995년도에 이르기까지 표본 법인체의 농업소득 적자가 점차 축소되어 30만 DM로부터 4만 DM으로 크게 줄어들었으며, 노동력단위당 노동보수 역시 꾸준히 개선되어 약 22,600 DM에서 약 35,000 DM(이것은 서독지역 전업농의 가족노동력에 대한 보수를 능가하는 수준)으로 상승한 것이다. 이와 같은 법인체 경영성과의 개선추세는 법인체 내에서도 노동력의 감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²²⁾ 이러한 사실은 체제전환 초기의 가족농 편향의 특별지원이 없어진다면 법인체가 더 한층 경쟁력을 발휘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21) 여기에 더하여 법인체가 지니는 기업적 혹은 조합적 형태가 가족농 구조에 비해 경영체 내에서의 거래비용측면에서 불리성을 초래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논자도 있다. 예를 들어 Schmitt(1991).

(22) 1992/1993년도의 법인체 표본농가(233)의 평균농경지는 약 1,700 ha로 1994/1995년도와 큰 차이가 없음에 비하여 평균노동력은 55.47 AK로 1년 뒤에 비해 약 10 AK나 많았다. BML (1994) 참조.

5. 東西獨 農業體制 統合 經驗의 含蓄

이상에서 우리는 구동독지역의 농업체제전환과정을 소유권제도의 확립과 새로운 경영체의 형성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여 보았다. 그러나 독일의 경험으로부터 언젠가 우리 앞에 다가올 남북한의 농업체제통합에 대한 준거나 기준을 바로 끌어내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왜냐하면 첫째, 남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적 통합이 어떠한 국내외 여건 아래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가 불명확하고 다양한 가능성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둘째, 북한이 걸어온 사회주의 농업의 역사가 동독의 그것과는 상당한 차이점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을 전제로 하면서 독일의 농업통합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합의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동독의 경우 소련 점령군의 토지개혁조치를 인정한 것은 경제적 고려보다는 (국제)정치적 힘에 의한 결정이라는 측면이 강하지만 그것이 통일 후 새로운 농지소유권 확정과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해 준 면이 있다. 물론 반환청구권이 없는 구소유자에 대해서 별도의 보상을 행한다는 방침에 따른 여러 가지 '去來費用'이 들게 되었지만 그것은 반환청구권을 인정해주었을 경우에도 피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거기에 훨씬 더 첨예하게 나타났을 구동독 농업자와 구소유자 사이의 갈등, 그로 인해 초래되었을 새로운 농업경영주체 형성과정의 지연과 혼란 등을 감안해보면 1945-1949년에 실시된 토지개혁 결과의 인정은 그 정치적 의미를 떠나서 경제적, 사회적으로는 적절한 조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에서의 토지개혁은 동독의 경우와는 달리 점령군의 법적 행위로서가 아니라 1946년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臨時人民委員會'에 의해 단기간에 훨씬 철저하게 이루어졌다(김운근·고재모·김영훈(1994), 김영훈(1997)). 이와 같이 동독과 다른 정치적 조건 아래에서 농업체제의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어떠한 방식의 소유권 정립방식이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둘째, 동독지역의 경우 1952년 이래의 농업의 사회주의화 과정에도 불구하고 협동농장조합원의 토지에 대한 사유권이 형식적으로나마 존재하였고 이것이 통일 후 사적 소유관계를 회복시키는 출발점으로 될 수 있었다. 체제전환 이전시기 농업에서 진행된 사회화의 정도와 새로운 소유관계 정립의 방식이 맞물려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 협동농장 내의 생산수단 소유의 사회화가 한층 진전되어 토지에 대해서도 공유화 단계에

까지 진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³⁾ 이 점을 감안한다면 새로운 소유관계를 재정립함에 있어서도 협동조합내 농민에 대한 반환방식 이외에 토지와 자산의 실물 또는 지분에 의한 배분방식 등에 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동독지역의 경우 새로운 농업체제전환에 따라 경영체가 성립하는 과정에서 종래의 농업종사자 가운데서 대량의 노동력이 배출됨으로써 농촌지역에서 갖가지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동독의 경우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²⁴⁾ 체제전환기에 농업분야의 고용상황변화가 전체경제 내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은 우리의 경우가 독일의 경우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독지역의 새로운 농업체제에서의 급격한 고용감축의 원인으로 작용한 바 있는 ‘높은 賃金과 두터운 社會保障, 補助金에 의한 낮은 資本價格’에 의해 촉발된 대규모 농업노동력의 급속한 방출은 바람직하지 않은 시책이라고 하겠다. 새로운 농지 소유권 제도의 정립과 새로운 경영체의 창설조건을 설계함에 있어서는 농업 및 농촌지역의 고용력 유지를 위한 고려가 중요한 과제를 이룬다고 하겠다.

넷째, 동독지역 농업체제전환과 관련된 정책들에 있어 가족농 창설 우대경향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동독지역 농업체제 가운데 협동농장의 후속체이면서 조합이나 기업의 형태를 띤 경영체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보았다. 그 원인의 하나로 구동독 시대의 농업의 과도한 산업화 및 전문화로 인한 농업 종사자의 자영경험의 부족을 들 수 있는 바, 이 점은 농업체제전환에서 농업종사자가 역사적으로 자영경험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의 경우는 1966년 이래 10-25명을 생산 및 분배의 단위로 묶는 분조제가 시행되어 왔고 1996년 이래 분조규모의 축소와 경제적 재량의 확대 등 그 개선이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제도운영과정에서 과연 북한 농민의 자영능력이 어느 정도 유지 또는 향상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요인을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체제전환기는 정책설계자가 가진 ‘最適經營體像’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되지만, 농업담당자의 역사적 경험의 축적을 무시한 설계는 그 의도의 실현은커녕 농업종사자와 농업체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23) 그 이전단계의 소유관계를 밝혀줄 수 있는 토지대장과 등기부는 조직적으로 폐기되었다고 한다[김영훈(1997)].

(24) 고용 및 총생산에서 대략 1/4 수준으로 추정된다[김운근·고재모·김영훈(1994, p. 25)].

서울大學校 經濟學部 教授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전화: (02)880-6371

팩시: (02)886-4231

〈附表〉協同農場의 構造轉換 事例

전환전				
	협력체 A	협력체 B	협력체 C	
경종 LPG	1	1	1	
축산 LPG	1	2	1	
농경지 (ha)	5,844	4,020	5,920	
가축(GV)	5,300	3,208	5,620	
취업자(AK)	801	519	702	
전환후				
농업등록조합	수	1	2	4
	농경지 (ha)	5,600	3,068	5,461
	가축(GV)	4,000	690	4,150
	취업자(AK)	387	158	394
자산관리회사	수	—	1	1
	농경지 (ha)	—	274	—
	가축(GV)	—	160	—
	취업자(AK)	—	8	6
재창업자	수	4	4	7
	농경지 (ha)	160	486	459
	가축(GV)	—	21	110
	취업자(AK)	4	5	7
기술, 가공, 유통분야 회사	수	6	1	1
	취업자(AK)	56	18	15
비취업자	(AK)	354	330	280

자료: Rost and Wissing (1992)

參 考 文 獻

- 김경량·이명현(1995): “독일의 농업구조 개편논쟁,” 『농촌경제』, 18.1, 131-152.
- 김수석(1997): “통일후 동독지역 집단농장의 사유화 과정,” 『농촌경제』, 20.4.
- 김영훈(1997): “체제전환기 농지 사유화 및 농업경영구조개편에 관한 고찰,”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윤근·고재모·김영훈(1994): 『북한농업개황』(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 농업 시리즈 1).
-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92): 『구 동독농업의 구조개편』(독일 농업 시리즈 1).
- Beckmann, V., and K. Hagedorn (1995): “De-collectivisation Policies and Structural Changes of Agriculture in Eastern Germany,” *MOCT-MOST*, 5, 133-152.
- Bundesministerium für Ernährung, Landwirtschaft und Forsten (BML): *Agrarbericht 1992, 1994, 1996, 1997, 1998*.
- Koester, U.E., and K.M. Brooks (1997): *Agriculture and German Reunification*, World Bank discussion paper 355.
- Paarlberg, P.L. (1992): “Agricultural Adjustment and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the Economy-Wide Adjustment in Eastern Germany,” *Göttinger Schriften zur Agrarökonomie*, 64.
- Rost, D., and P. Wissing (1992): “Die Umstrukturierung der Kooperationen Oßmannstedt (Thüringen), Rietnordhausen (Harzvorland) und Dahme (Brandenburg),” in *Fallbeispiele zu Umstrukturerungen von ehemaligen LPGen*, Schriftenreihe der landwirtschaftlichen Rentenbank Band 5.
- Schmitt, G. (1991): “Können die LPG und VEG in der ehemaligen DDR überleben?,” S. Merl and E. Schinke (eds.), *Agrarwirtschaft und Agrarpolitik in der ehemaligen DDR im Umbruch*, Duncker und Humboldt, Berlin.
- Thöne, K-F. (1993): *Die agrarstrukturelle Entwicklung in den neuen Budnesländern*, Verlag Kommunikationsforum GmbH, Köln.